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제2회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성실함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I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구분	채용내용		채용인원	예정직무	비고
	분야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공공급식사업부 수발주	신입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급식사업부 수발주공공급식사업부 계약 관리농가 및 업체정산클레임 처리 및 관리사무업무 보조 등	

II 보수 및 근무조건

보수 및 근무조건

보수

직급	보수	비고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월 2,244,660원 정도 (209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1일 기준 10,740원×8시간	※ 2024년 전주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름

○ 근무조건

채용분야 및 직급	근로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비고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2024.5.10.~2024.12.31. (약8개월)	주40시간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 기타 사항 >

- ※ 보수 및 근무조건은 전주시생활임금고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에 따름.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 재단 각 부서 및 영업장별 운영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

III 응시자격

○ 채용형태별

채용형태	채용기준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보조 역할과 직무를 수행할 만하다고 인정되는자

○ 우대사항

구분	내용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지원자	<table border="1"> <tr> <th colspan="3">3자녀 이상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th> </tr> <tr>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r> <td>만점의 3%</td> <td>만점의 4%</td> <td>만점의 5%</td> </tr> </table>	3자녀 이상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			1명	2명	3명	만점의 3%	만점의 4%	만점의 5%
		3자녀 이상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									
		1명	2명	3명							
		만점의 3%	만점의 4%	만점의 5%							
<table border="1"> <tr> <th colspan="2">2자녀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th> </tr> <tr> <td>1명</td> <td>2명</td> </tr> <tr> <td>만점의 1%</td> <td>만점의 2%</td> </tr> </table>	2자녀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		1명	2명	만점의 1%	만점의 2%					
2자녀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											
1명	2명										
만점의 1%	만점의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만점의 5%~10%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재단 정년기준(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예정일(2024. 5. 10.)에 정상출근 가능한 자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취업규칙 제12조(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임용 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무효화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V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전형절차		내용
1차 전형	서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등 응시원서 적격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 미달 및 블라인드채용 위반자 등 부적격처리
2차 전형	면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5개 항목, 100점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이해도(20),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 성품 및 협력·책임성(20), 창의력, 친화력 및 발전가능성(20) ▪ 합격기준 : 각 전형위원 합산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합격자 1명 및 후보자(분야별 1명) 공지

※ 최종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V 채용일정

○ 일정표(안)

구분	일정(안)	장소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4. 4. 17. ~ 4. 29.	전주시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전주시·재단 홈페이지 공고
1차 전형 (서류심사)	'24. 4. 30.	재단 본부	심사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고
2차 전형 (면접심사)	'24. 5. 2.	재단 소회의실	
합격예정자 발표	'24. 5. 3.		심사결과 및 합격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고
임용후보자 등록	'24. 5. 7. ~ 5. 8.	재단 본부	방문제출
신규 임용	'24. 5. 10.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 1.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합격자의 채용비위, 임용포기 등에 따른 결원 시 차순위자(2차 전형 결과)를 채용함.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8.(목)~ 4. 29.(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 한함)
- 방문제출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6(에이옥션타워 2층)
(경영지원부 인사팀)
- 이메일제출 : jyy@jeonjufood.org(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요망)
- 문의전화 : 063-214-7123(경영지원부 인사팀)

○ 합격자 발표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VI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응시원서 접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방문접수 및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약서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이메일접수
면 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 증빙서류 1) 다자녀가정 : 전주시 다자녀 우대증(또는 다동이 야호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당일 미제출시 기점 반영 불가
면 접 합 격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방문제출

※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취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함.

VII 응시자 유의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 규정에 의함
- 블라인드 채용전형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이 따름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세부 일정 등 전형에 관한 모든 공지 발표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s://jeonjufood.org>) 게시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증명서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합격 및 채용취소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최종합격 이후에도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함.
- 성범죄 경력자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 제한자) 및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 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취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63-273-2151) 또는 이메일(jyy@jeonjufood.org)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문의처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 인사팀(☎063-214-7123)